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균형 투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성과평가 제도 신설〉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19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29.
3. 회 부 일 : 2026. 1.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물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모태펀드가 조성·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물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물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물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가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물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가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소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을 추가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4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성과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에는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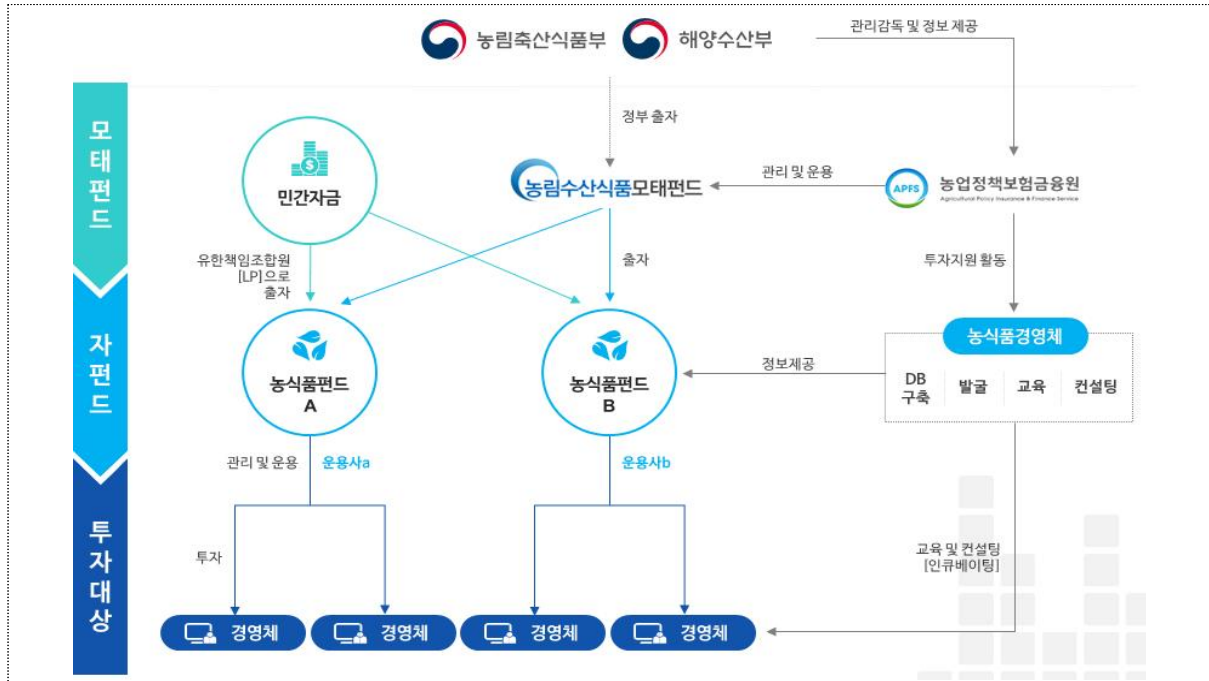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이나 회사에 대하여 청산 시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농림수산물산업 및 농림수산물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을 출자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모펀드)을 조성하고,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금은 민간(벤처투자회사 등)의 출자금과의 대응조성(matching)을 통하여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는 데 사용되며, 농식품투자조합은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

에게 배분하고 있음.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구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농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농업경영체의 비중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나(2024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및 농업법인 기준),¹⁾ 농식품투자조합의 수도권 투자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투자 편중이 지속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은 자본의 부족

1) 다만, 현행법상 투자 대상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의 범위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뿐 아니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농림수산물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원양사업자,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등이 포함되므로 투자 대상 경영체의 지역별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으로 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역 간 산업 경쟁력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2024년 지역별 농업경영체 현황]

시도	경영체수(경영주)	비율(%)	경영체수(농업법인)	비율(%)
서울특별시	24,512	1.34	119	0.66
부산광역시	21,120	1.16	113	0.63
대구광역시	44,640	2.45	180	1.00
인천광역시	25,553	1.40	173	0.96
광주광역시	30,718	1.68	188	1.05
대전광역시	23,506	1.29	115	0.64
울산광역시	27,242	1.49	110	0.61
세종특별자치시	13,351	0.73	117	0.65
경기도	226,240	12.41	2,172	12.10
충청북도	117,392	6.44	1,129	6.29
충청남도	200,689	11.01	2,069	11.52
전라남도	245,127	13.44	3,378	18.81
경상북도	277,654	15.23	2,030	11.31
경상남도	213,979	11.74	1,608	8.96
제주특별자치도	54,724	3.00	827	4.61
강원특별자치도	110,806	6.08	976	5.44
전북특별자치도	166,153	9.11	2,652	14.77
총계	1,823,406	100.00	17,956	1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

[최근 5년간 농림수산물투자조합 비수도권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전체(A)	비수도권(B)	비율(B/A)
2021	1,504	462	30.7
2022	1,399	237	16.9
2023	1,435	464	32.3
2024	2,147	896	41.7
2025	2,012	965	4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의 농림수산물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 강구 의무에 더하여,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식품투자모태펀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펀드로서 민간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분야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²⁾ 균형적 투자를 장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농식품투자모태펀드와 유사한 정책펀드인 중소기업모태펀드를 규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자펀드 투자실적, 자펀드 수익 및 비용 등을 포함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용실적을 보고

2)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2024.11.15.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받고 있는데,⁴⁾

이와 같은 운용실적 보고를 성과평가로 확대함으로써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정책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의 대상, 방법, 재원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조합⁵⁾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 시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익의 추가 배분 대상이 ‘조합 또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의 투자자(농식품투자모태조합포함)에게 수익을 배분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4)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농식품부고시)」 제6조(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펀드의 투자실적
2.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
3. 그 밖에 자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5)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4.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또한, 투자조합의 수익배분은 통상 사전에 정해진 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수익의 추가 배분’이 규약에 추가적인 성과보수 지급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규약과 별도로 추가 지급을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불분명함.

아울러, 추가 배분의 재원인 ‘수익’의 범위 역시 투자조합 전체의 수익인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회수한 수익인지 불분명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펀드에 대하여 의무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한 경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배분받을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6년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6.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보수

가. 관리보수란 인건비, 사무실 운용 등 펀드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펀드 약정총액의 2.5% 이내를 원칙으로 조합규약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나. 성과보수는 조합규약에 따라 자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모태펀드 수익분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조건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 동일 투자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인센티브 지급 시에는 복수 인센티브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한다.

[2026년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농식품투자계정)]

□ 인센티브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제외하고, 농식품 모태펀드에 분배될 금액의 20% 이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추가 성과보수를 업무집행조합원에 인센티브로 지급

* 단, 동일 투자건에 대해 중복적용하지 않음

- (스마트농업혁신성장(스마트농업)) ①전체 투자금액 대비 신주 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40%를 초과 시, 농식품모태펀드에 분배될 금액의 10% 이내, ②의무투자비율인 50%를 초과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할 경우 초과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 (스마트농업혁신성장(미래혁신성장)) ①전체 투자금액 대비 신주 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40%를 초과 시, 농식품모태펀드에 분배될 금액의 10% 이내, ②의무투자비율인 50%를 초과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할 경우 초과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 (청년기업성장) 의무투자비율인 70%를 초과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할 경우 초과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 (후속투자)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중 창업초기(Start-up) 펀드 및 사업화(Step-up) 펀드(기존 결성된 영파머스펀드 포함)의 투자기업(경영체)에 후속투자* 시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 단,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조합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고유계정으로 기(既) 투자한 기업(경영체)에 후속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이 이와 같은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취지라면, 수익 배분의 대상(운용사), 방법(성과보수의 추가 지급 약정), 재원(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해당 자조합으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부) 등 제도의 핵심 요소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